

[제명 개정(舊 의과대학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칙) 2006. 7. 25]

의료원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칙

제정 2005. 6. 7
 1차 개정 2006. 7. 25
 2차 개정 2012. 7. 17
 3차 개정 2012. 7. 24
 4차 개정 2013. 2. 25
 5차 개정 2017. 9. 4
 6차 개정 2022. 1. 12
 7차 개정 2022.11. 25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교원 연구년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25>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라 함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2. 7. 17, 2012. 7. 24, 2017.9.4., 2022.11.25.>
2. ‘연구년’이라 함은 교원이 자신의 분야에서 지식 및 전문성을 증진시켜 의료원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6. 7. 25, 2017.9.4>

제 3 조(연구년의 기간) ① 연구년 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장·단기 연수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 중 통산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2.1.12>

② 연구년의 경우 당해연도 실제 근무기간을 적용하여 연가일수를 부여한다. <개정 2017.9.4.>

제 4 조(연구년 신청자격)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4.>

1. 6년 이상 근무한 교원 또는 직전 연구년(장기 연수 포함)을 마치고 6년 이상 근무한 교원. 단, 무급 휴직기간은 근무년수에서 제외함. <개정 2022.1.12>
2. 연구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임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인 교원 <개정 2022.1.12>
3.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연수 출장이 없었던 교원
4. 직전 연구년 종료 후 제 11조 제 2항의 연구년 활용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교원은 이를 제출할 때까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2.1.12>

[조 신설 2022. 1. 12]

제 4조의 2(인원의 제한) ① 한 해 동안 연구년 교원수는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장·단기 연수자를 포함하여 교원 전체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 7. 25, 2017.9.4., 2022.1.12>

② 한 해 동안의 연구년, 연수, 휴직 등의 교원수는 해당 소속교실원(과, 센터 등 포함)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소속교실(과, 센터 등 포함) 교원수가 3인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9.4., 2022.1.12.>

제 5 조(연구년 신청절차) 연구년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년 허가신청서’를 연구년이 시작되는 학기의 개시일 8개월 전까지 소속교실 주임교수(간호대학은 간호학과장, 연구소는 소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 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상교원은 임상과장과 병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5., 2013.2.25>

[조명 개정 2022. 1. 12, 종전의 제 6조는 제 4조의 2로 이동]

제 6 조(신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1.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아 그 집행 중에 있는 경우
 2.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이 포함된 해당 학기 말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연구년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 차기 연구년 신청 시 유보된 기간을 최소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본원 감사팀에서 조사나 심의 중이거나 연구년 허가 보류의 권고의견이 있는 경우
 3. 외부수사기관 등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 7 조(심 사) ①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는 연구년 신청자의 연구년 활용계획, 최근 3년간의 교수업적 평가 결과, 과거 연구년의 활용실적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개정 2006. 7. 25>

② 학장은 의료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년 대상자를 선발하며 연구년이 시작되는 학기의 개시일 6개월 전까지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신분 및 처우) ① 연구년 기간 중인 교원은 의료원의 교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06. 7. 25>

- ② 연구년 기간 중에는 급여와 연구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급여 및 연구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연구년 기간 중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년의 목적에 부합되는 장학금, 연구비, 보조금 등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연구년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업무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제2항의 급여 및 연구지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④ 연구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 9 조(연구년의 시효 및 연기) ①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이 해당 기간에 연구년 전기간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 잔여기간은 포기하는 것으로 보며, 이 기간은 이월하여 활용할 수 없다.

② 연구년 개시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년 연기원을 제출하여 의료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한하여 연구년 개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년의 연기를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연구년 개시를 연기할 수 없다.

제 10 조(연구년의 개시) ① 연구년은 3월1일 또는 9월1일에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속교실 주임교수(간호대학은 간호학과장, 연구소는 소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방학을 이용하여 연구년을 조기에 개시할 수 있다. 단, 임상교원은 임상과장과 병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5, 2013.2.25>

②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은 연구년 개시 1개월 전까지 연구년 활용방안 등을 명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년 개시보고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보고의무) ① 제5조에 의거하여 제출한 연구년 활용계획 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연구년 활용계획 변경허가신청서’를 소속교실 주임교수(간호대학은 간호학과장, 연구소는 소장)를 거쳐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7.25, 2013.2.25>

②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은 연구년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연구년 활용 결과보고서’를 소속교실 주임교수(간호대학은 간호학과장, 연구소는 소장)를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고, 연구년 활용 결과물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25, 2022.1.12>

제 12 조(기간연장 금지) 확정된 연구년의 기간연장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9.4.>

제 13 조(복무의무 등) 연구년 수혜교원은 연구년 기간의 3배 이상 기간을 본 대학에서 복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해당교원은 연구기간 중 지급된 연구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3조 ①항에 대하여 본 연구년제 시행초기에 대기인원의 적체가 해소될 동안은 연구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 운영할 수 있다.
2.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정년퇴임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교원의 경우에는 제4조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하의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1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